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50
----------	-------

제출년월일 : 2025. 8. 14.

발 의 자 : 박은경, 박태순, 한명훈,
설호영, 유재수, 한갑수,
박은정, 선현우, 현옥순,
최찬규, 김유숙, 김진숙,
황은화, 송바우나,
이지화 의원(15인)

1. 제안이유

-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건설현장에 전자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 출퇴근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하여 노무비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노무비 청구 및 지급, 관리 및 지급확인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4항)
-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채용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조제2항 신설)

-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신설)
- 노무비 청구 및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 노무비 지급확인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신설)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4. 현행조례 : 붙임 2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3

6. 예산수반사항 : 붙임 4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7. 부서검토의견 : 붙임 5

【붙임 1】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 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건설노동자 전용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관련 정보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 관리되는 출퇴근 체제를 말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지원 및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개선에 관한 사항

- ②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수급인은 해당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능공 포함 지역건설노동자를 50% 이상 우선 채용하거나 고용해야 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 등)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라 한다)를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적용사업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과 노무비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시중노임 단가 이상 지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노무비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다.

제15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장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 현장별로 수급인 및 하수급

인 명의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노무비 지급확인 등) ①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관은 당월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이 확인된 경우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신속한 지급을 지시하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에 따라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한 기일을 정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신속히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78)

<별지 제5호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 사 명		
계약 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 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p>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p> <p>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p> <p>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노동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p> <p>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용어의 정의) 1. ~ 11.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u><신설></u></p>	<p>제2조(용어의 정의) 1. ~ 11.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u>12.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건설노동자 전용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관련 정보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 관리되는 출퇴근 체제를 말한다.</u></p>
<p>제6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① ~ ③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u><신설></u></p>	<p>제6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u>④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지원 및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u></p>
<p>제7조(관급공사 수급인의 노력) 관급공사 수급인은 시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1.·2.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u><신설></u></p>	<p>제7조(관급공사 수급인의 노력) ① ----- ----- ----- -----.</p> <p style="margin-left: 20px;">1.·2.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u>3.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개선에 관한 사항</u></p>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수급인은 해당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능공 포함 지역건설노동자를 50% 이상 우선 채용하거나 고용해야 한다.

제13조(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 등)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라 한다)를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적용사업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과 노무비 청구 내역을 비교하여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노무비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 ~ 제17조 (생 략)

제15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장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 현장별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노무비 지급확인 등) ① 해당 공사

의 건설사업기술인 또는 감독관은 당월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이 확인된 경우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신속한 지급을 지시하며 처리 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에 따라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한 기일을 정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신속히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한다.

제17조 ~ 제21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인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9-850
----------	-------

제안년월일 : 2025. 9. 1.

제안자 : 기획행정위원장

수정이유

- 안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은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 규정으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고용해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로 함.(안 제7조제2항)
- 발주자가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를 “시중노임
단가로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로 함.(안 제13조제2항)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고용해야 한다”을 “고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를
“시중노임단가로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관급공사 수급인의 노력) 관급공사 수급인은 시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신설></p> <p>3.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7조(관급공사 수급인의 노력) ①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개선에 관한 사항</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수급인은 해당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능공 포함 지역건설노동자를 50% 이상 우선 채용하거나 <u>고용해야 한다.</u></p> <p>제13조 ①(생략)</p> <p>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p>	<p>제7조(관급공사 수급인의 노력) ① (개정안과 같음)</p> <p>1.·2. (개정안과 같음)</p> <p>3.(개정안과 같음)</p> <p>4.(개정안과 같음)</p> <p>② ----- ----- ----- ----- ----- <u>고용할 수 있다.</u></p> <p>제13조 ①(개정안과 같음)</p> <p>② ----- ----- -----</p>

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과 노무비 청구 내역을 비교하여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중노임단가로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